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129
2025.5.12.

■ 판례 동향

보세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가공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 품목분류 동향

제8508호(진공청소기)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 개정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한국産 對美 수출품이 중국産? 비특혜원산지 새로운 변수 부상

9 772799 725008
ISSN 2799-72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 행 인	이종우
편 집 인	최흥식
총 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 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 케 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인 쇄	경성문화사
배 포	(주)아림디엠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5년 5월 12일(통권 제2129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한국産 對美 수출품이 중국産? '비특혜원산지' 새로운 변수 부상

06 Weekly News

14 전문가 칼럼

정진용 법무법인(유) 세종 관세전문위원

관세행정실무해설

22 **관세행정안내**

선별,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물품의 불인정공정기준 해당 여부

29 **질의응답사례**

원산지 표시

판례동향

31 **관세판례해설**

보세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가공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품목분류동향

39 **품목분류해설**

제8508호(진공청소기)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46 **품목분류 M.A.P**

짜장소스 분류 사례

49 **세번 바로잡기**

세폭직물

52 **상식 밖의 상품학**

홍역 백신 음모론

최신개정법령

54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56 **입법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한국産 對美 수출품이 중국産? '비특혜원산지' 새로운 변수 부상

관세청, 철강 제품 중심으로 미국 관세 정책 대응 방안 공개

미국이 FTA와 별도로 적용하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국내 수출업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미 FTA에 따르면 한국産인 물품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産이 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이러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맞서려면 국내 수출기업들은 해당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관세청은 4월 30일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美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고 미국의 관세부과 동향과 비특혜원산지 판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관세청은 對美 수출기업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철강 제품'을 공개했다.

관세청 박헌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해당 자료 서문을 통해 "미국이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포함한 모든 추가관세는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며,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수출기업에 생소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부과 체계는 기본 또는 한·미 FTA 세율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관세 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이 더해지는 구조다.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은 제232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 상호관세는 제외된다.

● 한국産 물품의 미국 수출 시 적용되는 관세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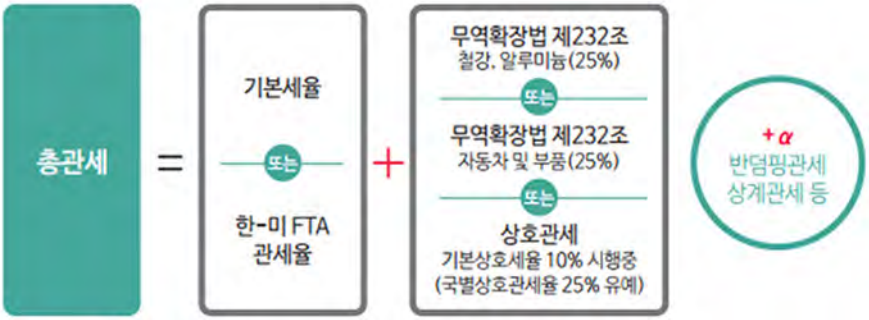

출처 :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철강 제품'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통상적인 한·미 FTA의 원산지기준과는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을 말한다. 이는 **2개 이상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실질적변형'이란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① 중간재의 품명, 특성, 용도의 변화 여부, ② 중간재가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지, ③ 중간재의 용도(use)가 최종재에 사용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지(pre-determined), ④ 중간재가 이후 가공공정에서 정체성(identity)을 잃었는지, ⑤ 조립·가공 공정이 단순한 조립·가공에 해당되는지 등이 고려된다.

사안별 구체적인 판단은 집행기관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위임돼 있다. 美 연방규정 19 CFR 134(원산지 표시 규정)에 실질적변형이 규정됐는데, 물리적 형태나 특성의 변화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불충분하며 공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돼 있다.

중국産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미 FTA의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으로는 '한국産'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변형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중국産'으로 판정될 수 있다. 결국 제232조에 근거해 철강 품목관세 부과 대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25%의 관세, 여기에 對中 추가관세까지 붙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우리 기업에 생소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슬사랑관세사무소의 홍재상 관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비특혜원산지 기준 관련 문의가 많았고 중국에 대한 제301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며, "과학적이고 투명한 개념이 아니어서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청은 수입 전 품목분류, 원산지, FTA 적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BP 사전심사제도(CBP Advance Ruling, 19 CFR 177)를 활용한다면 통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제도는 서면, 또는 온라인(erulings.cbp.gov)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CBP CROSS(ruling.cbp.gov/home) 검색(search)란에 품명 또는 세번을 입력하면 CBP 사전심사 사례를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이 공개한 CBP 사전판정 사례에 따르면, 가령 중국産 페로실리콘 덩어리를 일본으로 수입한 뒤 분쇄 및 파쇄를 통해 분말로 가공, 표면 안정화 처리 및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의 경우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産으로 판정됐다. 이에 대해 CBP는 "실질적변형 유무 판단에 관세분류가 변경됐는지 여부가 결정적이지는 않으나, 이 경우 원재료와 최종 제품이 동일한 세번에 분류된다는 점에서 해당 분말은 새롭고 다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일본에서 실질적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종 제품은 중국産이라고 판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만 태국에서 제조하고 그 외 부품은 모두 중국에서 태국으로 수입한 뒤 함께 포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원산지는 태국으로 판정됐다. CBP는 태국에서 생산된 주방 싱크가 최종 제품의 가치, 중량 및 기능 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최종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속품이 세트로 포장됐더라도 독립된 정체성을 유지하므로 개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요구됐다.

한편,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자료는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은 "향후 美 관세당국과의 정보 교환 및 한국원산지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해 품목군별로 확대해 발간할 예정"이라며, 국내 수출입기업은 FTA뿐만아니라 비특혜원산지 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국가 핵심기술 13개 분야 76개 → 79개로 확대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 핵심기술에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Multilayer Ceramic Capacitor)·아연 제조기술과 합성개구레이더(SAR, Synthetic Aperture Radar) 관련 기술이 신규로 지정된다. 또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표현도 변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6일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작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국내외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현재 지정돼 있는 국가핵심기술 목록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지정은 총 3건으로 ▲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아연제련기술(헤마타이트공법), ▲SAR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이 새롭게 핵심기술에 포함된다.

신규지정기술	내용	지정 필요성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기술	전자제품 내 안정적인 전류 통제를 위한 소자 관련 기술	기술우위 유지를 위해 유출방지 필요
아연제련기술 중 헤마타이트 공정기술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기술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 해외 의존도 감소 등 안보적 필요
SAR(합성개구레이더)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지구표면 영상을 획득하는 레이더 제작, 영상획득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	국방상 중요한 기술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기본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 금속, 조선, 자동차·철도 등 총 6개 분야 15개 기술이 변경된다.**

이로써 현재 13개 분야 76개로 구성된 국가핵심기술이 13개 분야 79개 기술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이 있으면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산업부 기술안보과(044-203-4858)로 제출하면 된다.

| 하구현 기자 |

해수부, 對美 수산식품 경쟁력 회복 위해 범부처 TF 출범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로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을 회복할 의지를 밝혔다.

미국의 주요 수산정책에는 ▲자국 수산물의 생산·가공·수출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해소 등 수산물 무역 전략 공동 개발, ▲주요 수산물 생산국의 IUU, 강제노동 등 무역 관행 및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대응 검토가 포함됐다.

이에 해수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美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특히 김의 경우 조미김 중심으로 수출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며,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통상 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 3,680만 달러 수출 목표"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 준공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9일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제자유무역지역은 수출 진흥, 외국자본 투자유치, 지역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09년 지정됐으며, 작년 기준 총면적 약 30만 평에 36개社가 입주해 수출 5,296만 달러, 매출 6,289억 원을 기록했다.

이번에 준공된 제2표준공장은 2021년 사업 개시 이래 총 3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년의 노력 끝에 완공됐다.

준공식에 참석한 산업부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제2표준공장 완공으로 앞으로 전기전자·신재생에너지 등 10여 개의 수출유망기업을 유치해 연 3,680만 달러의 수출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2표준공장이 단순한 산업기반 조성을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2025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녹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5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총 1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분석이 이뤄졌고 녹두 1개 품목이 선정됐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해당 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해당 연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FTA로 인한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해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에서 관련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9, kys17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농업인 등의 지급 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식약처·수품원, 페루産 수산물 전자증명 동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5월 1일 선적분부터 페루産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증명서 전자증명 시스템을 동시 도입한다. 페루産 오징어가 우리나라 오징어 수입량(10만 3,000여 톤)의 가장 큰 비중(약 22%)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검사·검역으로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면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위생·검역증명서의 위·변조가 원천 차단돼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수입자는 전자증명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를 각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이 전송한 전자증명서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페루産 수산물 검역(수품원)과 검사(식약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한 기관만 전자증명서를 도입할 경우 수입자가 다른 기관에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 실질적인 효과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전자증명서 동시 도입으로 검사·검역이 신속해져 영업자 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선한 수입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성은 기자 |

해상 마약밀수 건수는 0.5% 중량은 53.6% 차지 ··· 관세청, 단속망 강화

관세청이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에 대해 단속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5월 7일 동해세관에서 열린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FBI)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 이용 마약밀수는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을 포함하면 최근 5년간 총 20건, 3톤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밀수 중 건수 비중은 0.5%로 높지 않지만, 중량 비중은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우선 관세청은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선박에 대해 검사 선별과 집중검사를 강화한다. 선박 하부를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 마약에 부착된 GPS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GPS탐지기 등 첨단검색장비를 도입하고, 주요 항만세관에 마약탐지견을 추가 배치하는 등 마약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동남아·중남미의 주요 마약출발국 세관을 비롯해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우범정보 입수를 늘릴 계획이다.

예비 글로벌 유니콘 기업 특별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누적 투자실적이 50억 원 이상(지역스타기업은 30억 원)이고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접수기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기업 ①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충족 기업 ②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 기업 ③ 지역스타기업(누적투자 30억 원) 중 성장성, 혁신성 충족 기업	15개社 내외	최대 200억 원 이내 특별보증 및 세계시장(글로벌) 전문상담(컨설팅) 지원 등	5. 7. ~ 5. 30.

중기부는 1차 서류평가, 2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약 15개社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인공지능(AI)·빅데이터, 로봇, 시스템반도체, 클라우드·네트워크 등 딥테크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기술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최종평가 우수기업(상위 30%)은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해 성과연동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 성과에 연동한 보증지원 방식으로 선정 이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보증심사 없이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한국産 의약품·반도체 수입 ··· 미국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 피력

정부, 美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 및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 대비 의견서 제출

미국의 한국産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우리정부 의견서가 제출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와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각각 5월 4일과 7일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1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과 관련해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 절차에 따라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韓·美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韓·美 동맹에 기여해 왔다. 양국 간 제약산업과 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었다"며,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 것"이라 설명했다.

또 한국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양국의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오히려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 대해서는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해당 품목의 미국 수입 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産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해 특별히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發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를 지난 2월 18일부터 운영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하구현 기자 |

EU發 지속가능성에 PFAS 규제까지 ··· 중장기 대응 요구

국표원, 탄소·AI·화학물질 TBT 확산에 수출기업 지원 본격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또한 높아지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TBT 관련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나섰다. 첫 번째 행보는 2025년 신기술·신산업 TBT 대응 포럼이었다. 지난 4월 17일 포럼에서 국표원 TBT종합지원센터의 오기수 센터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어,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인 1,334건(12.0%)이었다. 오 센터장은 국가별 주요 규제 동향을 설명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EU의 에코디자인 규정과 배터리 규정, AI법과 사이버보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 규제 등을 지목했다. "각국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견고화하기 위해 기술규제를 적극 활용하는 상황"이라며, "신산업·신통상 정책의 일환으로 복잡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은 2024년 7월 발효된 상황이다. 의회 승인안에 명시된 제품에는 철 및 철강, 알루미늄, 직물, 매트리스를 포함한 가구, 타이어, 세제, 페인트 등이 포함됐다. 'EU 에코디자인 규제 주요 내용'을 발표한 국표원의 백춘열 코디네이터는 "대상 범위가 에너지 관련 제품에서 물리적 상품(중간재 포함)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에코앤파트너스의 옥해명 실장은 'EU CBAM 최신 동향과 간소화 패키지'를 설명했다. EU CBAM은 EU 역내로 수입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이 EU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제품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적용하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유럽위원회는 올해 2월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며, 지속가능성 규정을 간소화할 방침을 알렸다. 그중 CBAM과 관련된 내용에는 소규모 수입업체 면제, 배출량 계산 및 보고 요건 단순화 등이 있다. 특히 수입면제 기준이 수입 건당 150유로 이하에서 연간 수입물량 50톤 이하로 변경됐다. 다수의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감소하겠다는 것인데, 이때 기준은 EU 수입업자의 수입량이다. 즉 국내 수출 중소기업은 거래하는 EU 역내 기업의 연간 수입물량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눈여겨볼만한 동향 중 하나는 바로 PFAS 규제다. EU 회원국이 별도로 PFAS 규제를 추진하는 추세로, 프랑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PFAS 함유 화장품, 스키왁스, 의류의 제조·수입·수출·판매가 금지된다. 덴마크는 내년 6월 1일부터 PFAS가 함유된 소비자용 의류, 신발, 방수제 판매 및 수입이 금지된다. 미국은 주별로 품목 중심에서 단계별 규제로 확대하는 추세다.

한편, 국표원은 주요 규제 동향을 전파하는 한편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TBT포럼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김성은 기자 |

환율·관세 불확실성 속 수출기업 2곳 중 1곳 자금난 악화

무역협회, 체감 대출금리 인하·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지원 확대 조언

최근 급격한 환율 상승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절반가량은 자금사정이 지난 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4월 30일 '2025년도 수출기업 금융애로 및 정책금융 개선 과제'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이후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되는데도 응답기업의 46.7%는 2024년 4분기 대비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연매출 기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자금사정은 나빴다.**

기업들의 자금사정 악화 원인으로는 매출 부진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58.5%로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인건비 상승(35.4%), 환율 변동(34.1%) 등이 지목됐다. 이에 수출기업들은 정책금융 금리 인하에 보조를 맞춘 시중은행 가산금리의 추가적 인하, 재무제표 및 물적담보 위주의 대출한도 심사 관행 개선, 보증한도 설정 시 수출 증가율 반영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율 이외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도 기업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철강·알루미늄 25% 품목관세로 철강·금속을 주력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31.8%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45.6%는 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영향(공급망 비용 증가, 투자계획 지연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관세 대응책으로 비용 절감(46.6%), 정책금융 지원 활용(40.6%), 대체 수출시장 개척(40.3%)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만, 미국 내 현지생산 확대를 고려하는 기업은 2.8%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현재 진행되는 정책금융 중 수출바우처 등 직접자금 지원(35.8%)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이어서 신용보증 지원(33.8%), 무역보험(32.5%)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응답자들의 70.9%는 현재 체감되는 정책금융 규모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보고서에는 우리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감 대출금리를 낮추고, 원자재 구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 담겼다. 연구·조사를 담당한 무역정책지원실은 현재 1조 5,000억 원 규모인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무역금융 프로그램 한도를 확대한다면 기업의 체감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원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환율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특별자금을 마련해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율 감면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세 피해기업 대상으로는 컨설팅 및 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 피해규모가 입증된 기업에 한해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청, 美 관세 특별대응본부 활동 점검

관세청은 5월 1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4월 활동실적을 되돌아 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한 달여간 미대본은 부당한 과세 조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및 자동차·부품류가 실제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미국이 발표한 과세 대상 품목분류번호(HTSUS) 목록을 우리나라 품목분류 번호(HSK)로 매칭한 연계표를 공개했다. 이어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의 연계표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對美 수출입 현황,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수출입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뒤 결과를 관계 부처에 일·주간 단위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날 월간점검 회의에서 관세청은 미대본 출범 이후 추진한 관세행정 대책들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살핀 뒤 향후 활동 방향 및 세부과제 간 우선순위 분류 등을 논의했다.

관세행정 개선·효율화 위한 연구 공모전 개최 … 챗GPT 활용 논문 공모 신설

관세평가분류원은 2025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을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에 신설된 챗GPT 등 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 연구에 LLMs AI를 활용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관세 분야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신청 접수는 6월 30일까지, 논문 제출은 10월 31일까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산 샤인머스캣, 호주 수출 검역요건 완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28일 샤인머스캣도 캠벨얼리·거봉과 같은 수출 검역요건을 적용하도록 호주 측과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2014년 국산 포도가 호주 시장에 진출했지만, 샤인머스캣의 경우 호주에서 요구하는 훈증 검역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웠다. 이번 합의 조치로 샤인머스캣 역시 수출단지 등록, 봉지 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샤인머스캣은 주로 대만, 미국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에 호주가 추가되면서 해외 판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최근 5년간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은 연간 16톤 수준이었으나 샤인머스캣이 추가되면 수출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검역본부는 2025년산 샤인머스캣 수출 건부터 합의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 우선 안내하는 한편,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관세법 시행규칙」 어떻게 달라지나?



정 진 용 | 법무법인(유) 세종 관세전문위원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21일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24년에 진행된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맞춰 해당 법령에서 위임하는 규정을 개정한 한편, 현행 관세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관련해 기존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수출입 기업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가 참고해야 할 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관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가. 관세 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 조정(시행규칙 제9조의 3)

「관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충당 또는 환급[1]이 발생하거나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2]에는 「관세법」 제47조 제2항[3] 또는 「관세법」 제48조[4]에 따른 가산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1항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제1항 :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제47조 제2항 :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4) 「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관세법 시행규칙」제9조의 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서는 본건 이자율을 매번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본건 이자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준으로 조정했**는데, **기존 '1천분의 35(연 3.5%)'에서 '1천분의 31(연 3.1%)'로 하향조정**하게 됐다.

●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변경 내용 요약 ●

개정 전	개정 후
연 3.5%	이자율 하향 연 3.5% → 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조정)

나.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 등재(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34호 신설)

개정 전「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중심병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33개 기관[5]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6]에 대해 최대 80%[7]까지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해외 직구 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33개 감면대상 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을 새롭게 추가했는데, 식품안전정보원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5조의4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 식품 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8]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한해 이번「관세법 시행규칙」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학술연구 감면기관으로 추가된 식품안전정보원의 경우 **해당 기관이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한해서만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러한 품목 제한규정에 유의해 감면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 및「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2항
6)「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 및「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7)「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5항 :「관세법」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8)「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4조 제2항 제3호

●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기간 추가 신설 ●

현 행	개 정 안
□ 관세 감면 대상기관 *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8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수입물품을 실험·분석하는 국가기관 ○ 한국소비자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전쟁기념사업회 ○ 국토안전관리원 ○ 과학관 ○ 농업기술원 ○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 국방과학연구소 등	□ 대상기관 추가 ○ (좌 동)
<추 가>	○ 식품안전정보원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한정)

다.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주류 관련 규정(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서는 여행자 등이 휴대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 기존 최대 2병으로 병수를 제한하고 2병을 합산해 용량 2리터(L) 및 미화 400달러 이하에 한해서만 면세를 적용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면세 주류에 대해서 적용되는 최대 2병이라는 병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용량 2리터(L) 이하 및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기로 개정했는데, 본건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새로운 주류 면세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구분	면세한도	
	개정 전	개정 후
술	2병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로 한다

기존 면세한도에서는 작은 용량의 주류를 여러 병 구입할 경우 용량과 금액제한을 초과하지 않아도 2병이 넘으면 관세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용량과 금액제한 한도 내에서 병수 제한 없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여행자가 여러 종류의 주류를 소량씩 구입하는 경우에도 용량과 금액기준을 충족하면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행자들이 주류를 여러 병 구매하는 경우 용량과 금액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어, 반입 전 주류 면세한도를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라. 재수출 면세 대상물품 추가 신설(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4호)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이하 '재수출 면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서는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수출 면세가 적용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4호는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 반도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와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이하 '기존 적용대상 물품')에만 재수출 면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기존 적용대상 물품에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을 추가했으며,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운반용 카트와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취급하는 관련 수출입 기업은 개정된 재수출 면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 인하(시행규칙 제68조의2)

「관세법」 제176조의2 제4항에서는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운영인의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에서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특허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9]될 것으로 보인다.

9) 부칙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 제68조의2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 조정 내용 요약 ●

해당 연도 매출액	개정 전	개정 후
2천억 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
2천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2억 원 +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억 원 +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5)
1조 원 초과	42억 원 +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의 1)	21억 원 +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이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의 인하는 최근 부진한 면세점의 경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향후 면세점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 원산지증명서 발급운영 사항 신설(시행규칙 제76조의2 신설)

「관세법」 제232조의2 제3항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구분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 등의 **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에 대한 권한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발급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10]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11])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

10)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제6호
1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제3항

(2)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기한 신설

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관세법」 제232조의2 제1항[1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에 대해서 해당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련 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해야 되도록 기한을 새롭게 신설**했다.

다만, 이와 같은 발급 요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과실·착오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기한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사.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과세자료 서식 신설(시행규칙 별지 제76호 서식)

「관세법」 제264조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도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에[13] 해당된다.

이번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1항의 제68호와 별지 제76호 서식을 신설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과세자료 등을 제출할 때 별지 서식에 맞춰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관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서식을 참조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 「관세법」 제232조의2 제1항 :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3) 「관세법」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7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 별지 제76호 서식 신설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신설 2025. 3. 21.>

(앞쪽)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

1. 제출자

②가상자산사업자명 (제출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①제출시기	년 월 일
⑤주소		⑥계좌번호		④실명계좌발급 금융기관	
				⑦기축가상자산 가액 적용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2. 가상자산거래내역

번호	⑧거래자 인적사항					⑨가상자산 종류		⑩거래 전 잔고	⑪거래 입자	⑫거래 유형	⑬거래 수량	⑭단가	⑮양도 등		⑯취득 등			⑰거래상대방 인적사항				⑱거래 후 잔고
	성명 (상호)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계정 관리 코드	계좌 번호	지갑 주소	코드	심볼						거래 가액	수수료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자 수정여부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상자산주소		
																				소재지	주소	
1																						
2																						
3																						
4																						
5																						
6																						
7																						
8																						
9																						
10																						

「관세법」 제264조, 제264조의2제7호, 제26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3조의2제1항, 별표 3 제7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68호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2. 평가 및 시사점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관세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된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리했으며, 현행 관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이나 관련 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년간 이어진 면세점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 면세점 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여행자 휴대품의 주류 면세한도의 병수 제한을 폐지했으며,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재수출 면세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됐고,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하는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리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과세자료 확보가 필요해지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세청장에게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했다.

따라서 수출입 기업과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면 2025년에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업무에 참조하길 바란다.

선별,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물품의 불인정공정기준 해당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ASEAN FTA
질문	폐PET병(제3923.90호)을 수거해 선별, 분쇄 등의 공정을 통해 생산한 PET WASHED FLAKE[제3907.60호(현재 기준으로는 제3907.61호 또는 제3907.69호), 섬유용(화학솜) 및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의 제조공정이 한·ASEAN FTA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 공정] 폐PET병 투입 및 선별 → 라벨 제거 → 습식분쇄 → 이송저장 → 세척 → 건조 → 포장출하
답변	비록 협정 규정에 선별, 단순분쇄 및 세척 등의 개별 공정이 불인정공정으로 명시돼 있어도 선별·라벨 제거·분쇄 등의 전체 공정이 특허를 보유한 기계 등을 이용해 수행되므로 단순한 공정으로 볼 수 없음.

2. FTA 적용요건 및 충분가공원칙, 불인정공정기준

(1) 개요

상품무역 환경에서의 FTA는 특혜관세 부과 목적으로 활용된다.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해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거나 무관세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A는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 서로에 대한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증 서류인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할 것이다. 결국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FTA 특혜관세 적용이 이뤄진다.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상품 요건이라는 것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충족됐는지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품무역에 관한 FTA 목적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협정상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FTA 실무상 원산지 상품 요건에 관한 부분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결국 각 FTA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각 협정에 존재하는 원산지규정)을 전체적으로 만족시켜야만 원산지 상품으로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협정의 원산지규정에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기준(General Rules)이 존재한다.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정해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HS Code별 원산지기준이 List로 제시돼 있어 이를 'List Rules'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기준은 ①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원칙(공통기준)과 ② 기본원칙 또는 품목별 기준의 엄격성 또는 원산지 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분야별 특례규정으로 구성된다. 공통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 역내생산원칙(영역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이 존재한다. 그중 충분가공원칙은 역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돼야 한다는 원칙이며, 그에 관한 협정상 규정에는 불인정공정기준이 존재한다.

(2) 충분가공원칙 및 불인정공정기준

충분가공원칙은 물품이 생산될 때 역내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쳐 생산돼야 한다는 기준이다. 원산지라는 개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충분한 제조·가공이 수행돼야만 해당 국가가 원산지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의 목록(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또는 부속서 2-가(부가규정)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분히 가공'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정이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각 FTA에서 정한 품목별기준과 일반기준을 충족한 경우, 즉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충족한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충분가공원칙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협정에서는 '불인정공정'기준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은 품목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공정의 수행 결과라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는 충분히 가공됐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이다.

한·미국, 한·캐나다 FTA를 제외하고 나머지 협정에서는 불인정공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 방식은 조금씩 상이하다.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ASEAN FTA 등은 '불인정공정'으로 표현하는 반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한·EU, 한·튀르키예 FTA 등은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표현해 해당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최소 공정 또는 가공'으로 이를 표현하고 있다.

한·ASEAN FTA는 불인정공정 관련 규정을 일반품목군과 섬유류로 나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품목의 불인정공정은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8조에서 규정하며, 섬유류의 경우 부속서 3의 부록 3(부속서 3에 대한 해석 주석)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ASEAN FTA에서 일반품목에 대한 불인정공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운송 혹은 저장 중에 상품을 우수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보존 공정, 포장의 변경, 단순한 세척, 단순한 혼합, 동물의 도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불인정공정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많은 FTA가 불인정공정기준을 '열거규정' 형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FTA 불인정공정 기준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충분가공원칙의 개념 및 불인정공정이 도입된 것은 역내가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고 불인정공정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가공돼야 하기 때문에, 반제품이 아닌 원재료 상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공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불인정공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활용된다.

첫 번째로 불인정공정기준은 FTA 담당자들이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대한 보호장치로 활용된다. 즉, 당사국에서 원산지가 아닌 재료에 대해 수행된 사소한 가공작업에 의해 원산지 지위가 부여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부정적 테스트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 상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인정공정기준 이상의 공정이 수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불인정공정기준은 누적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모든 FTA에서는 재료누적을 활용할 수 있고, 일부 협정에서는 공정누적 또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료누적을 활용할 때 한 당사국에서 원산지인 재료가 다른 당사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의 그 원산지 재료에 대해 수행된 유일한 작업이 불인정공정기준에 해당된다면 누적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제품은 결과적으로 원재료 수입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우가 다소 다르지만, RCEP의 원산지재료 생산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관세차별(RCEP 제2.6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CEP에 따르면 양허표상 관세차별 품목의 경우 원산지재료생산품(PE, Producted Entirely)에 대한 원산지 판정 시 원산지 상품의 RCEP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로 인정되지만, 그 원산지 상품에 대해 최소공정(불인정공정기준) 외의 생산 공정이 그 수출 당사자에서 발생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결국 '누적'이 적용되는 원산지재료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서 최종 수입국의 양허표상 국가별 관세차별이 이뤄지는 품목이라면, 불인정공정 여부를 두고 최종적인 원산지를 판단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질문 & 답변 사례에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고순도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할 때 재료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를 상품 생산국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품 생산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질문 사항은 폐PET병(제3923.90호)을 수거해 선별, 분쇄 등의 공정(폐PET병 투입 및 선별 → 라벨 제거 → 습식분쇄 → 이송저장 → 세척 → 건조 → 포장출하)을 통해 생산한 PET WASHED FLAKE[제3907.60호(현재 기준으로는 제3907.61호 또는 제3907.69호가 된다), 섬유용(화학솜) 및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의 제조공정이 한·ASEAN FTA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의다. 일단 해당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 대상 물품이 한·ASEAN FTA상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충분한 공정이 이뤄졌는지 바꿔 말하면 협정상 불인정공정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제시되는 폐PET병(제3923.90호)은 웨이스트로서 완전생산기준에 따른 처리를 하지는 않고, 일단 비원산지재료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완제품인 PET WASHED FLAKE(제3907.60호, 현재 기준으로는 제3907.61호 또는 제3907.69호가 된다)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제3907.61호 또는 제3907.69호의 한·ASEAN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또는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RVC 40%)이다.

HS Code	품목명	원산지 결정기준
제3907.61호	점도번호가 그램당 78밀리리터 이상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3907.69호	기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이에 따라 비원산지 재료인 폐PET병(제3923.90호)이 제조가공을 통해 제3907.61호 또는 제3907.69호로 변경됐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를 충족했음을 알 수 있다.

(3) 불인정공정기준 여부 확인

다만, 폐PET병 투입 및 선별 → 라벨 제거 → 습식분쇄 → 이송저장 → 세척 → 건조 → 포장출하를 진행함에 있어 한·ASEAN FTA의 불인정공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공정은 한·ASEAN FTA의 불인정공정기준 중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다.

제조공정	불인정공정기준
선별	자. 채질, 선별, 구분, 등급 분류, 등급화, 매칭
라벨 제거	-
분쇄	아.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세척	다.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단순한 세척, 세정, 제거
건조	-
포장	차.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모든 다른 단순한 포장 공정

제시된 공정 중 선별, 단순 분쇄, 단순 세척,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은 불인정공정기준에 해당된다. 라벨 제거나 건조와 같은 내용은 정확히 한·ASEAN FTA의 규정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물품의 라벨 제거는 재활용물품을 만들기 위한 아주 특이한 상황으로 한·ASEAN FTA 부속서 3 제8조 “카. 표식, 라벨, 로고 및,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지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와 유사한 내용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며, 협정 간 유추해석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한·중 FTA 제3.7조 최소 공정 또는 가공에는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이 불인정공정기준 중 하나로 규정돼 있기도 하다.

결국 단순히 건조나 라벨 제거가 한·ASEAN FTA 목적상 불인정공정에 해당되지 않고, 불인정

공정기준을 '열거규정' 형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FTA 불인정공정 기준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실제 메인 제조공정인 선별·분쇄·세척·건조 등의 기준 등이 불인정공정기준 이상의 공정을 수행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 분쇄·단순 세척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는 이 공정이 '단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한·ASEAN FTA에서는 "'단순한'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비록 협정 규정에 선별, 단순 분쇄 및 세척 등의 개별 공정이 불인정공정으로 명시돼 있다고 해도 선별, 라벨 제거, 분쇄 등의 전체 공정이 특허를 보유한 기계 등을 이용해 수행되므로 단순한 공정으로 볼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여기서 관세청에서는 특허받은 기계를 활용해 물품에 대한 특성이나 속성이 변경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기계를 활용해 PET WASHED FLAKE를 제조했다면,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기계 등을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단순한' 작업을 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즉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는 제품을 그대로 얻기 위해, 즉 제품이 그 특성(characteristics)이나 속성(properties)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기계 없이도 유사한 특성이나 속성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한·ASEAN FTA와 관련된 사례는 아니지만, EU·UK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TCA)의 불충분한(불인정)공정에 대한 지침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다.

해당 지침에서는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에 관한 사례로 다음을 제시했다.

> The cutting in the UK of EU originating wood into shorter pieces for wood burning stoves is to be considered as simple and thus an insufficient operation; whereas the cutting of diamonds is to be considered as a more than simple cutting operation because special machinery and skills are needed.

사례에서는 목재를 장작용 난로로 사용하기 위해 더 짧은 조각으로 자르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지만, 다이아몬드 절단은 특수 기계와 기술이 필요하므로 단순 절단 이상의 작업으로 간주된다고 해설한다. 이는 결국 단순한 분쇄나 절단 등이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matching 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체질, 선별, 분류, 등급 매기기,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 포함)]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사례를 제시한다.

> Different types, sizes and quality of potatoes are imported in bulk from the EU into UK. The sorting of potatoes by hand in the UK is to be considered as simple and so is an insufficient operation. Cumulation cannot apply and the UK origin cannot be obtained.

사례에서는 다양한 종류, 크기 및 품질의 감자를 손으로 분류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므로 불인정공정에 해당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침에서는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bag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나 보드에 고정하기 및 기타 모든 단순한 포장 작업)에 대한 사례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The placing of EU originating watches in jewellery cases in the UK is to be considered as simple and so an insufficient operation. As a consequence cumulation cannot apply, the watches cannot obtain the UK origin and preferences cannot be granted in the EU if exported back there.

첫 번째 사례에서는 시계를 보석케이스에 넣는 작업은 불인정공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 The placing in the EU of third country medicaments in bulk into a glass ampoule requires special skills or apparatus going beyond simple packaging – thus it would not be considered an insufficient operation. Therefore, the product specific rules would be met, the EU origin acquired and preferences granted if the medicaments in the ampoules would be exported to the UK.

다만, 모든 넣기·포장작업이 단순한 것은 아닐 것이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대량 의약품을 유리 앰플에 넣는 작업에 대해서 이 작업은 단순한 포장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술이나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인정공정으로 간주되지 않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고 EU 원산지 제품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불인정공정기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즉, 구체적인 생산 방법이 '불충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생산 과정, 기계의 사용 여부, 그러한 기계 사용이 제품의 특성이나 속성에 미치는 영향,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수행돼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원산지 / 원산지 표시

중국에서 조립·생산한 손목시계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무브먼트는 일본산입니다. 무브먼트와 케이스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도 될까요?

원산지가 중국인 손목시계의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출처를 함께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Mov't made in Japan, Case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와 같은 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물·보세 / 보세구역외장치 허가

보세구역외장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이 제한돼 있나요?

「관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세구역외장치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1. 물품이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의 창고 안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2. 다량의 산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 후 다시 운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3.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부패, 변질하여 다른 물품을 오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과 방진, 방습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
4. 귀중품, 의약품, 살아있는 동·식물 등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이 곤란한 물품
5. 보세구역이 아닌 검역시행장에 반입할 검역물품
6. 보세구역과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양륙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으로 운반하는 것이 불합리한 물품
7.「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으로서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설 미비, 장소협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보수작업이 곤란하고 감시단속 상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8. 자가공장 및 시설(용광로 또는 전기로, 압연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 등 물품
9.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구역외장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보세구역외장치와 관련해 세관장이 해당 세관의 현실적인 감시 여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시업무 수행상 곤란이 없는 장소인지 확인한 후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통관 / 에어소프트건 통관

에어소프트건 물품의 통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 직구(수입) 시 개인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돼야 합니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의해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모의총포란 외형상 실제 총으로 오인될 정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춰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1. 모의총포의 분류기준

… <중략> …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발사되는 물체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2)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4)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 총열, 총신, 견착부 등 부품을 고루 갖추어 조립 시 총기와 유사한 형상을 갖추거나 발사가 가능한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경찰청 유권해석)

세관은 소관기관(경찰청)의 확인을 근거로 통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물품이 모의총포 등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것은 다음의 소관기관에서 안내받기 바랍니다.

※ 경찰청 : 182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02-3272-8368

보세공장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가공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민 정 화 | 부산세관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생산라인을 보유하지 않은 채 반도체 설계·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반도체 생산라인을 보유한 보세구역 내의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이하 '보세공장'이라 한다)와 집적회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보세공장에 이 사건 물품의 원재료인 웨이퍼(Wafer)를 공급했고, 보세공장은 위 원재료에다 수입신고 없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몰딩수지 등의 원재료를 결합해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한 후, 보세공장 운영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마치고 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해 원고에게 인도했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별도의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물품을 ①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국내 보세공장에 공급한 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위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8조에 따라 피고에게 총 ○○건의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 피고로부터 관세 ○○○원을 환급받았고, ②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후 「환급특례법」 제12조, 제13조, 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6조, 제18조에 따라 피고에게 총 ○○건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해 피고로부터 관세 ○○○원을 간이정액환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사후심사 결과 이 사건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10호-92호, 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고 한다) 제3-2-3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에서 정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의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위 ①항의 환급신청 건에 대해 관세 ○○○원을 징수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했다.

2. 원고 주장

가. 원고는 「환급특례법」이 정한 간이정액환급 대상자로서 내국물품인 원재료(웨이퍼)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국내 보세공장에 위탁 가공해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한 후 이를 수출했으

므로, 이 사건 물품은 간이정액환급 배제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보세공장은 관세 환급과 관련해 '외국'으로 간주되는 지역이 아니어서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된 이 사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물품은 원고가 외국에서 '구매'한 제품이 아니라 임가공의 위탁자로서 납품받은 제품에 불과하므로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이 사건 물품이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될 때 이뤄지는 수입신고는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통관할 때 이뤄지는 수입신고와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나 간이정액환급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3. 관련 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 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① 세관장은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세 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일부개정된 것)

■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10-92호)

■ 제1-2-3조(환급신청인)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에 의하여 수출된 경우로서 수출자와 수출화주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제3-2-3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
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 제185조(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4. 판결 요지

가. 원심 판결

1) 「환급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연간환급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생산해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에 관한 개별적인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 사실만을 확인해 관세청장이 책정·고시한 간이정액환급률표상의 기준에 따라 해당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주체,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환급사무처리고시」는 제3-2-3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제외물품)에

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을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뜻한다.

한편, '보세'란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 두는 것, 즉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를 의미하고, '국내에 있어서의 관세상의 외국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하는데, 보세구역은 이러한 보세물품을 반입, 장치, 가공, 제조, 건설, 전시, 판매하는 구역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로 외국물품을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고, 또한 통관절차를 이행하려는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의미하는바(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바8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85조 제1항에서는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그중 특허보세구역을 다시 보세창고, 보세공장 등으로 구분하면서,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88조는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보세공장과 이 사건 물품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보세공장에 위 물품의 원재료인 웨이퍼를 공급한 사실, 보세공장은 위 원재료에다 수입신고 없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몰딩수지 등의 원재료를 결합해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한 후, 보세공장 운영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마치고 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해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별도의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국내의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령의 규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물품은 원고가 공급한 내국물품인 웨이퍼와 보세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물품인 몰딩수지 등이 결합돼 제조·가공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이후 보세공장 측의 수입신고를 거쳐 국내로 반입된 것은 「관세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별도의 가공 절차를 거지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거나 국내의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것은 관계법령상 간이정액환급의 배제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임가공계약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이 사건 물품은 적어도 관세 영역에 있어서는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과 달리 이 사건 물품이 관세 영역에 있어서 '내국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관세법」제185조, 제188조에 의하면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즉 '외국물품'으로, 보세공장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제품 중 당해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내국물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인 웨이퍼와 외국물품인 몰딩수지 등을 함께 사용해 제조한 물품이므로「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임가공계약의 위탁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보세구역 내의 생산업체인 이 사건 보세공장에「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품의 임가공을 위탁한 것은 적어도 관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이「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이를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해 원고에게 인도하려면「관세법」의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와 그에 대한 신고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인데, 이 수입신고의 성격과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통관할 때 이뤄지는 수입신고의 성격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대상판결[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해, ① 중소기업인 원고가 ○○○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그들의 보세공장 내에서 원고 공급의 내국물품인 웨이퍼(Wafer)와 그들 보유의 외국물품인 몰딩수지 등을 결합해 이 사건 물품을 제조·가공하도록 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후 별도의 가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출하거나 다시 국내의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공급한 후「환급특례법」제13조 등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 관세를 환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관세법」제188조 본문에 의해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는 이 사건 물품은「환급사무처리고시」제3-2-3조 제1호 소정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배제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의해 환급한 관세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4101호 판결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3조 소정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배제대상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검토 의견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뜻한다. 이때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수출용 원재료)는 ①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화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돼 소모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며, ② 원상태 수출의 경우는 수출물품을 말한다.

환급의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증명)로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해 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소요랑 계산 없이 수출 사실만을 확인하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환급에 비해 훨씬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았다면, 세관장은 그 환급금액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한다. 「환급사무처리고시」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간이정액환급 적용배제대상의 하나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 등을 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보세공장과 이 사건 물품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보세공장에 원재료인 내국물품인 웨이퍼를 공급했고, 보세공장은 위 원재료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외국물품인 몰딩수지 등의 원재료를 결합해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한 후, 보세공장 운영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마치고, 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해 원고에게 인도했다. 원고는 위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거나 국내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공급했다.

원고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국내 보세공장에 위탁 가공했으므로, 간이정액환급 배제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에 더해 보세공장은 '외국'으로 간주되는 지역이 아니므

로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된 이 사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물품이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될 때 이뤄지는 수입신고는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통관할 때의 수입신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관세법」 제185조,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즉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인 웨이퍼와 외국물품인 몰딩수지 등을 함께 사용해 제조한 물품이므로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그리고, 「관세법」상 '외국물품'인 이 사건 물품을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은 「관세법」 규정상의 수입신고와 수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수입신고와 수리가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해 통관할 때의 수입신고의 성격과 다를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임가공계약의 위탁자인 사실이 있긴 하나, 보세공장은 관세영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물품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공급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해 간이정액급률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제8508호(진공청소기)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김 명 섭 | 인천세관 FTA검증1과장

Ⅰ. 분류 체계

1) 제8508호(Vacuum cleaners, 진공청소기) 해설

이 호는 단일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호의 용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진공(Vacuum) 방식이어야 한다. 둘째는 청소(Cleaner) 기능이다. 따라서 전동기를 갖춘 것인지 상관없고 건식 방식인지 습식 방식인지에 상관없으며 휴대용인지, 가정용인지, 산업용인지에 관계 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진공 방식의 청소기는 대부분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축에 장착된 터빈의 힘을 이용해 진공 상태를 만들어 흡입하므로 모터를 갖추고 있다. 청소 기능은 먼지가 포함된 물질의 흡입과 공기 흐름의 여과를 의미한다.

주의할 점은 제90류 주 제1호 타목과 제85류 주 제1호 라목에 따라 제9018호의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진공청소기는 이 호에서 제외되며, 진공 방식이 아닌 기계식 청소기는 제8451호(세척기)에, 전기식의 것은 제8509호(가정용 전기기기) 등에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진공청소기는 흡입헤드, 솔, 침구 두드림 용구 등과 같은 부속품이 같이 제시된다. 이 경우 진공청소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종류와 수량이라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이 호와 같이 분류한다. 별도로 제시된다면 당연 제16부 주 제2호(부분품 분류규정) 규정 등에 따라서 해당 호에 분류한다.

주요 품목은 센서와 CPU(Central Processing Unit)를 갖춘 로봇형 진공청소기(모터를 자장한 것)와 유·무선 진공청소기(모터를 자장한 것)다.

진공청소기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모터, 필터, 바퀴, 팬, 케이스, 먼지통, 흡입구(후드), 호우스 등으로 구성돼 있고 로봇 진공청소기는 여기에 카메라, 장애물센서, 범퍼센서, 리모컨 수신부, 초음파센서, 배터리, 추락방지센서와 같은 전자장비와 각종 센서 등이 추가돼 구성된다.

진공청소기의 원리	로봇 진공청소기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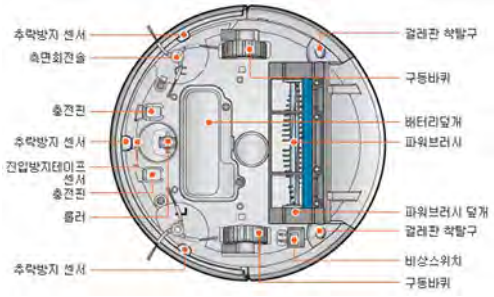

2) 제8508 소호의 구성

전동기를 자장한 진공청소기, 전동기를 자장하지 않은 진공청소기,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른 부분품 소호로 구성돼 있다.

소호 체계를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제8508.11호 : 출력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으로 전동기를 갖춘 진공청소기
- 제8508.19호 : 출력 1500와트 초과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초과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으로 전동기를 갖춘 진공청소기
- 제8508.60호 : 전동기를 갖추지 않은 진공청소기
- 제8508.70호 : 부분품(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분류되는 부분품)

Ⅱ. 관련 규정

제8508호의 기기와 부분품을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제16부 주 제1호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중략> …

타. 제90류의 물품

… <중략> …

하. … <중략> …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나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 제40류·제42류·제43류·제45류·제59류·제6804호·제6909호).

■ 제85류 주 제1호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중략> …
라.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

■ 제16부 주 제2호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3호 나목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제8508호 해설서
제85류의 주 제1호 라목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호에는 휴대형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진공청소기를 분류한다. 건식인지 습식인지에 상관없으며, 회전식 솔·양탄자 두드림 장치·다기능 흡입 헤드와 같은 부속품이 함께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진공청소기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지가 포함된 물질의 흡입과 공기 흐름의 여과이다. 흡입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축에 직접 장착된 터빈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먼지와 그 밖의 물질은 내부나 외부에 장착된 먼지 봉투나 용기에 모인다. 이때 흡입되어 걸러진 공기는 모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한다.

이 호는 특히 진공청소기 형태의 말이나 소의 털 손질기를 포함한다.
양탄자를 그 자리에 두고 양탄자에 세정용액을 분사 후 다시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청소하는 양탄자 청소용 기기(건식과 습식의 콤비네이션 진공청소기는 아니다)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51호나 제8509호).
이 호는 또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진공기기도 제외한다(제9018호).

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하는 장비
이 호의 진공청소기는 부속 장치(솔·광택기·해충박멸 스프레이 등의 부속품)나 호환성 부분품(양탄자 장치·회전식 솔·다기능 흡입 헤드 등)과 함께 제시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함께 제시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보통 본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종류와 수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본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이들 부속품이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의 해설서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의 기기용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1) 제16부 주 제1호 및 제2호 가목 관련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85류 주 제1호에 의료용 진공기기를 제외해 제901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과나 산부인과에서 수술로 제거한 부위를 흡입해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진공흡입기, 파쇄한 요로결석을 흡입해 배출하는 진공흡입기는 제9018호에 분류한다. 별도로 제시되는 솔과 회전식 솔은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 따라 제9603호(브러시)에 분류한다.

또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호' 해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공 방식이 아닌 기계식 청소기는 제8451호(세척기)에, 진공 방식이 아닌 전기식의 청소기는 제8509호(가정용 전기기기)에 분류되며, 별도로 제시되는 부분품 중 모터는 제8501호(전동기)에, 필터는 제8421호(여과, 청정기)에, 팬은 제8414호(팬)에, 카메라는 제8525호(디지탈카메라)에, 각종 센서는 제9027호 내지 제9031호에 각각 분류한다.

2)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관련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바퀴, 케이스, 먼지통, 흡입구 등은 나목에 따라 제8508.70(부분품) 소호에 분류한다.

3) 세계관세기구(WCO) 분류사례

기준년도	1998. 11.(제22차 HSC 위원회)
결정 부호	제8508.11호
품명	건식 및 습식 진공청소용 기계
결정 내용	조정 가능한 다리바퀴를 가진 베이스 위에 장착돼 있으며, 전원장치(전기모터)와 물통으로 구성돼 있다.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부속품(예 : 노즐세트, 진공청소를 위한 브러시 및 장식도구, 살충제 같은 액체용액을 분사하기 위한 특수호스 및 스프레이어 어셈블리, 팽창노즐 등)과 함께 제시됐다. 기계의 밑부분은 고속 원심분리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원심분리기를 통해 방향제 몇 방울을 물에 떨어뜨림으로써 가정용 방향제나 공기청정제를 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물은 먼지나 기타 불순물을 모으는 필터 역할을 한다. 제16부 주 제3호 적용

기준년도	1998. 11.(제22차 HSC 위원회)
결정 부호	제8508.11호
품명	건식 및 습식 진공청소기
결정 내용	다리바퀴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전동기를 자장하고 있으며, 산업 및 상업적 용도(호텔, 레스토랑, 가게, 사무실, 공업 시설, 작업장 등)에 사용되도록 의도됐다. 다음과 같은 기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대 엔진 동력 : 1,500W, 전기 접속 : 230V - 50Hz, 공기 흐름 : 3,600l/m, 진공 압력 : 23,000Pa, 탱크 용량 : 38 ~ 50l, 중량 : 11 ~ 12kg, 크기 : 445 x 450 x 505mm. 이 장치는 특정 표준 부속품과 함께 제시됐지만 그러나 기타 (선택적) 부속품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장치는 건조한 물질[먼지 및 기타 이보다 알갱이가 큰 물질(예 : 종이 웨이스트, 목재 칩, 나뭇잎, 유리나 기타 광물의 웨이스트, 진흙,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등)]과 액체를 진공청소하도록 설계됐다.
	

Ⅲ. 주요 쟁점사항

제8508호의 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진공청소기의 분류는?
2) 제8508.11 소호와 제8508.19 소호를 구분하는 출력 기준은?

1)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진공청소기의 분류는?

제84류 주 제11호 라목에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제8486호는 제84류 내에서 최우선 분류검토 호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전제조건(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에 따라 마목에 규정하고 있는 진공청소기는 제8486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제8508호로 분류한다.**

시행일자	2015년 1월 29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508.11-9000호
품명	PCB Dust cleaner
물품 설명	ㅇ 물품 이미지 및 구성 요소 - 구성 요소 : 흡입기(상·하판), 관, 흡입장치(모터, 필터 집진장치 등으로 구성) ㅇ 물품 기능 - 반도체 공정 중 SMT Line에 설치되는 장비로 PCB기판이 컨베이어벨트에 의해 이동되는 과정에서 Air fan에 의해 흡입기가 작동하면서 PCB기판 위의 미세한 먼지 등을 흡입해 관을 통해 흡입장치 내로 집진하는 기능(필터는 6개월 주기 교체, 출력 230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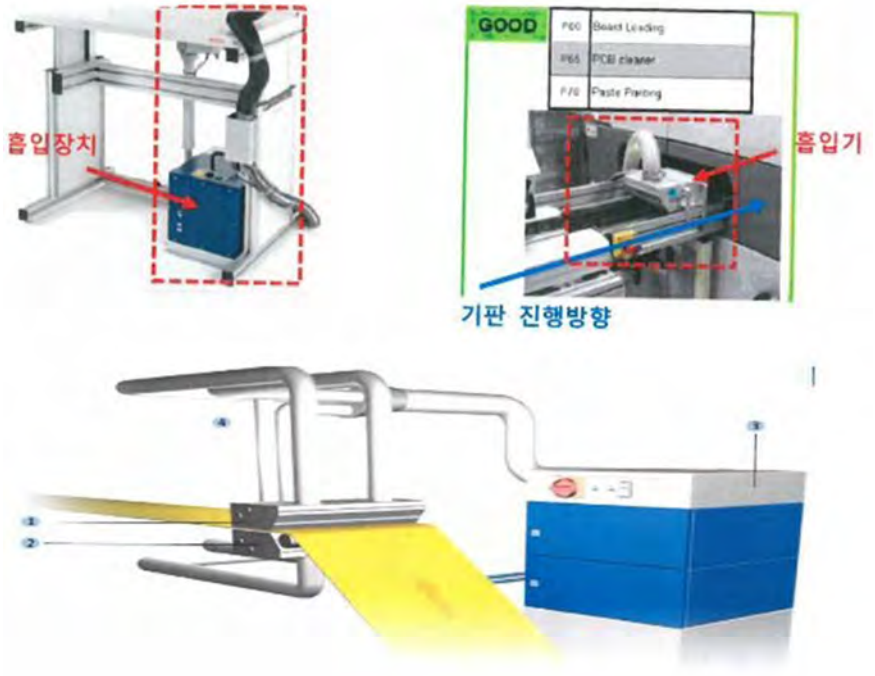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에서도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마.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08호의 용어에서는 ‘진공청소기’로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해당 해설서 제8508호에서도 “이 호에는 휴대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진공청소기가 분류된다. … <중략> … 진공청소기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지를 비롯한 물질의 흡입과 공기 흐름의 필터링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PCB기판 위에 부품들을 실장하기 전 기판 위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한 흡입기를 통해 진공방식에 의해 먼지를 제거하는 1,500와트 이하의 먼지백을 갖춘 진공청소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8.11-9000호에 분류함.

2) 제8508.11 소호와 제8508.19 소호를 구분하는 출력 기준은?

제8501호, 제8502호, 제8504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출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 제8508.11-1000호 분류 사례 ●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 세번	제8508.11-1000호
품명	ROBOT CLEANER
물품 설명	핸디청소기와 물걸레 이동 청소기로 구성된 진공 물걸레 로봇 청소기 - 핸디청소기, 물걸레 이동 청소기를 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장착해 사용할 수도 있음. - 사양 : 출력 110W, 먼지통 용량 0.5ℓ - 구성 요소 1. Handy : 사용자가 수동으로 먼지 및 이물질을 흡입 청소하거나 Vehicle에 안착해 자동으로 먼지를 흡입하는 기능 2. Vehicle : Handy 없이 랜덤 이동하면서 물걸레질을 하거나, Handy를 안착해 먼지를 흡입하면서 물걸레질을 하는 기능 3. Cradle : Handy의 착탈식 배터리를 Cradle에 거치해 충전하는 기능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8508호에는 '진공청소기(Vacuum cleaners)'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5류 주 제1호 라목에 따라 이 호에는 휴대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진공청소기가 분류된다. 건식 및 습식 진공청소기를 불문하고 회전식 솔·카펫 두드림 장치·다기능 흡입 헤드와 같은 부속품이 함께 제시되었는지 여부는 상관 없다. 진공청소기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지를 비롯한 물질의 흡입과 공기 흐름의 필터링이다. 흡입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축에 직접 장착된 터빈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먼지 및 기타 물질은 내부 또는 외부에 장착된 먼지 봉투 또는 용기에 모인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핸디청소기와 물걸레 이동 청소기로 구성된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로봇 청소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8508.11-1000호에 분류함.

짜장소스 분류 사례
- 2024년도 4월 품목분류 사전심사 -

김 홍 관 | 부산세관 분석실

1. 물품 소개



※ 해당 사진은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어린 시절 맛있게 먹었던 음식으로 '짜장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특별한 날에야 맛볼 수 있었던 그 짜장면의 맛은 어린 마음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평소에는 쉽게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기에 생일이나 졸업식 같은 특별한 날에야 겨우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었다. 지금은 다양한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됐지만, 그 시절 짜장면이 줬던 설렘과 감동은 여전히 많은 이의 추억 속에 남아 있다.

짜장면이라는 단어는 중국어 '炸醬(작장, zhajiang)'에서 유래한 '짜장'과, 한자어 '麵(면)'이 결합된 말이다. 따라서 중국어와 한자어가 섞인 독특한 구조를 가진 단어라 할 수 있다. 한동안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지만, 실제 언어 사용과의 괴리를 고려해 2011년부터는 '짜장면'도 표준어로 함께 인정됐다.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단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짜장면을 파는 식당을 우리는 보통 '중국집'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짱깨집'이라는 말도 쓰이기 시작했다. 이 표현은 다소 속되거나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짱깨'는 중국어 '掌櫃(장궤, zhǎngguì)'에서 유래한 말로, '가게 주인'이나 '주인장'을 뜻한다. 그런데 이 말이 짜장면과 연결되며, '짱깨집'이 곧 '짜장면 파는 집'이라는 식으로 잘못 쓰이게 된 것이다.

이번 호에는 인스턴트 라면용 짜장소스의 품목분류 사례를 소개한다.

2. 분류 사례

ㅇ 개요

- 양파 38%, 감자 11.6%, 춘장 13.5%, 옥배유 5%, 정제수 16.8%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색계 액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

- 용도 : 짜장소스(짜장라면의 소스로 면과 함께 섭취)

ㅇ 결정 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 세번 : 제2103.90-9090호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곡물 가루·전분·기름·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 <중략> …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이나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 … <중략> …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에멀젼(emulsion)이나 현탁액(suspension)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즉,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와 과실과는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짜장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했다.

3. 품목분류 적용 길라잡이

부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 <후략>
류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호	(제2103호)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HSK	(제2103.90-9090호) 기타 - 기타 - 기타

4.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2103.90-9090호
품명	Sauces; BLACK SOYBEAN SAUCE(일품 짜장소스)
물품 설명	- 양파 38%, 감자 11.6%, 춘장 13.5%, 옥배유 5%, 정제수 16.8%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색계 액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 - 용도 : 짜장소스(짜장라면의 소스로 면과 함께 섭취)





세폭직물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어릴 적 명절이면 기차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기차를 타면 가족끼리 의자를 돌려 마주 앉아 간식을 먹곤 했던 경험이 기억난다. 여행 중간중간 항상 기차 판매원의 카트가 지나다녔고 카트에는 항상 과자, 음료수, 오징어, 계란 등이 채워져 있었다.

다양한 간식 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주황색 망에 두세 개씩 들어있던 계란이다.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삶은 계란이 희한하게도 기차만 타면 맛있게 느껴졌다. 요즘에는 플라스틱 포장이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주황색 망에 두세 개씩 들어있는 계란을 보면 그때의 추억이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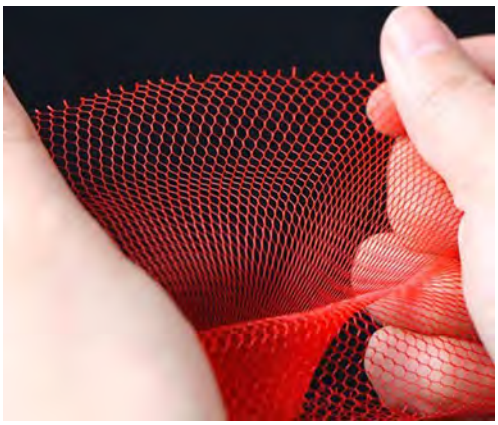

위와 같은 망 형태의 직물은 과일·야채 등을 포장할 때도 사용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포장용 망'에 대해 품목분류를 해보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합성 모노필라멘트사를 평행하게 병렬한 층을 상호 예각으로 겹쳐 만든 관 형상의 직물로 '그 밖의 조물제품'에 해당하는 제4602.90-0000호로 신고했다.

먼저, 제4602호의 '조물제품'이란 '조물재료'를 인터레이싱(interlacing), 직조, 그 밖의 조립 방법에 따라 제조한 반제품(제4601호)과 특정의 제품(제4601호와 제4602호)을 의미하는데, '조물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제46류 총설**

(1) 짚·버드나무 가지(osier)·버드나무·대나무·골풀(rush)·등(rattan)·갈대·칩우드(chipwood)[목재의 얇은 스트립(strip)]·인발재·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예 : 나무껍질·좁은 잎·라피아(raffia)의 스트립]. 단, 이들이 플레이팅(plaiting), 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2) 방적하지 않은 천연방직용 섬유

(3) **제39류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스트립·이와 유사한 것[그러나 횡단면의 치수가 1㎜ 이하인 모노필라멘트 또는 시폭(視幅 : apparent width)이 5㎜ 이하인 제54류의 인조섬유의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4) 종이의 스트립(플라스틱으로 피복된 것을 포함한다)

(5) 방직용 섬유의 심(core)[방적되지 않은 섬유, 브레이드(braid) 등]에다 플라스틱의 스트립을 감거나 씌운 것이나 플라스틱을 두껍게 도포시킨 것으로 구성된 재료[이들 재료는 그 물품의 심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나 브레이드(braid)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유의할 점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스트립의 경우는 횡단면의 치수를 고려해야 하며, 횡단면의 치수가 1㎜ 이하인 모노필라멘트와 5㎜ 이하의 스트립 경우는 제46류의 조물재료로 판단하지 않고 '방직용 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6류 총설의 제외 규정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제46류 총설**

이 류에서 다음의 것은 조물 재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로부터 만든 물품이나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 <중략> …

(ii) 횡단면의 치수가 1㎜를 초과하지 않는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시폭(apparent width : 즉, 접혀진 상태·평평한 상태·압축된 상태·꼬임상태에 있어서)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인조섬유제의 스트립(strip)과 평판 모양의 튜브(tube){길이방향으로 접은 것을 포함하며 압축이나 꼬임 모양[인조스트로(straw)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 것에 상관없다}(제11부)**

따라서, 본 물품은 횡단면의 치수가 1㎜ 이하인 인조섬유 모노필라멘트로 만든 것으로 조물재료로 만든 제품에 해당하지 않았다.

관세율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32호에 '그 밖의 직물 :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분류된다.

세폭직물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제5806호 해설서**

(A) 세폭(細幅 : narrow)직물

… <중략> …

(1)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서 제직된 폭이 30㎝ 이하인 스트립 모양**의 직물로서 양 가장자리에 단(selvedge)(평판상이나 관상)이 있는 것.

(2) 광폭의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된 직물로부터 절단된(또는 찢어진)[길이 방향이나 가로 방향으로 절단(또는 찢은 것)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스트립(strip)으로서 폭이 30㎝ 이하인 **양 가장자리를 단(selvedge)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 하였거나 **한쪽 가장자리는 일반적으로 직조된 단(selvedge)으로 하고 다른 한쪽 가장자리는 단(selvedge)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 한 것**.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은 절단된(또는 찢어진) 직물의 가장자리가 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이음새가 없는(無繼目 : seamless) 관(管) 모양의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된 직물**로서 **펼쳤을 때 폭이 30㎝ 이하**인 것. 그러나 스트립 모양 직물의 가장자리를 결합시켜 만들어진(봉합이나 고무접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管) 모양의 직물은 이 호로부터 제외한다.

(4)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된 직물을 가로방향으로 절단하여 직물의 가장자리를 접지 않았을 때의 폭이 30㎝ 이하인 가장자리를 접은 스트립(strip)으로 되어 있는 바이어스 바인딩(bias binding). 이 물품은 광폭직물을 절단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직조한 단이든지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이든지 단(selvedge)이 없다.

… <중략> …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나 제5801호(velvet)까지 속하는 직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직**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오로지 앞에서 설명한 **(1)부터 (4)까지에서 설명된 기준에 의하여 이들 직물과 구분**된다.

즉, 세폭직물이란 가장자리에 단(selvedge)이 있고 폭이 30㎝ 이하로 직조된 직물을 말한다. 관 형태일 경우에는 이음새가 없으며 폭이 30㎝ 이하로 직조된 직물을 말한다.

본 물품은 인조섬유 모노필라멘트사를 평행하게 병렬한 층을 상호 예각으로 겹쳐 실의 교차점을 접착하고 이음새 없이 폭이 30㎝를 넘지 않는 관 형상으로 만든 것으로 세폭직물에 해당해 제5806.32-0000호로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WATERMELON MESH BAG	4602.90-0000 (FCN1 0%)	Narrow woven fabrics	5806.32-0000 (FCN1 0%)

홍역 백신 음모론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미국에서 10년 만에 홍역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홍역 비상이 걸렸다. 美 보건당국은 홍역 백신 접종을 지속해서 권장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음모론이 백신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5월 1일 기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미국 22개 주에서 총 935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텍사스와 뉴멕시코에서 발생한 사망자 중 한 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령기 아동으로 확인됐다. 영양과 위생 상태가 낮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부르는데,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홍역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홍역 확산을 집단면역이 붕괴한 결과로 보고 있다. 집단면역의 효과는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감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지면 그 질병은 전파가 느려지거나,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홍역은 백신 접종률이 95% 이상으로 대다수가 면역력이 있어야 집단면역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음모는 음모일 뿐이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06년 국내에서 퇴치 선언을 해 사라진 병으로 인식되던 홍역이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에 이어 안산, 시흥 등에서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원인은 해외여행객들의 교류로 보고 있다. 이에 관계 당국에서는 홍역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지킬 것이며, 해당자는 즉시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하고 있다.

홍역은 제2군 법정 감염병으로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이나 공기 중 바이러스로 감염된다. 초기 발열, 기침, 콧물이 나타나는 등 기침과 증상이 비슷하다.

관세율표에서 백신은 제3002호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 <중략> …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후략>'에 분류된다. 단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관세율표 제3004호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 <후략>]'에 분류된다.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29호_2025.5.12.

최신개정법령

대통령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486호, 2025.4.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계란가공품 등 7개 물품에 대해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3까지”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3]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2	냉동한 것			
0203	29	기타	삼겹살은 제외한다.	0	10,000톤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8	1	알의 노른자위			
0408	1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350톤
0408	19	기타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700톤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200톤
0408	99	기타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2,500톤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	1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	11	건조한 것	식품 원료용의 것	0	150톤
3502	19	기타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100톤

입법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338호, 2025.4.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99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전환된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인용 조항의 현행화(안 제40조, 제41조, 별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제1항 및 제3항이 제70조의 제2항 및 제4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여, 당초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함.

나. 과태료의 기준 신설(안 별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및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locia@korea.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1, 팩스 044-203-4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356호, 2025.5.7.)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근거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내외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현재 지정되어있는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목록개정 [별표]

- (신규지정) 국가안보·국민경제적 파급효과, 국내외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분야 1개 기술, 금속 분야 1개 기술, 우주 분야 1개 기술 등 총 3개 분야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변경) 기술환경 변화, 기술 진보 등을 반영하고 실제 사용하는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현재 지정되어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 금속, 조선, 자동차·철도 등 총 6개 분야 15개 기술 변경
- (종합) 현재 13개 분야 76개로 구성된 국가핵심기술을 13개 분야 79개 기술로 확대·변경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기술안보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203-4858, 전자우편 1011sooji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5-230호, 2025.5.7.)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90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화된 방식(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에 따른 처리방법 명시(제2조)

- (제3항) 자동화된 방식을 통한 접수 시 세부 처리 방법 반영

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사후 보완처리 방법 개선(제3조)

- 검역을 완료한 건에 한하여 보완하도록 자구 수정, 명확화

다. 선상검역 검역신청서 제출을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보완(제5조)

- (제1항) 현행 별지 제2호의 선상검역 신청서와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방법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방법을 추가
- (제4항) 2개 이상의 항구에서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1차 검역 결과를 2차 입항지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및 처리하도록 명확화

라. 검역업무 결재 및 처리절차 방법 보완 등(제10조)

- (제2항 제4호) 현장검역으로 종료되지 않는 소독·폐기건은 담당계에서 처리 가능토록 추가
- (제5항) 검역기록표를 구체적으로 검역신청서와 훈증소독작업결과서로 명시

마. 보세운송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송 상태 명확화(제13조)

- 밀폐된 컨테이너나 용기 → 밀폐된 컨테이너나 밀폐형 용기로 자구 수정

바. 압·몰수품 통관 이전 이후를 통관 전·후로 의미 명확화(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27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2) 전화번호 : 054-912-0613,

3) 전자우편 : neodavi@korea.kr

4) 팩스 : 054-912-062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식물검역과 이재홍 주무관(neodavi@korea.kr, 054-912-0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커스트라(www.custra.com) 참조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9호, 2025.2.2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5.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9호, 2025.2.28.)

2. 개정사유

□ 미국 관세조치 등 불확실한 여건을 반영, 철강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벌크선에 적재·수출되는 '철강제 관류'를 선상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

□ 적재화물이 없는 자력운송수단(항공기·선박) 수출 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의무 완화

□ 수출신고 빈번오류 항목을 자율정정 대상에서 제외,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선상수출신고 대상품목 확대

○ 국내에서 제조하여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철강제 관류에 대해 체선료 절감, 적재기간 단축 등 지원을 위한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
(제38조 제1항 제4호)

※ (기존) 산물·광산물, 신선도 유지 수산물, Ro-Ro선 적재 신품차량, HS 제72류 철강류
(추가) HS 제7304호 ~ 제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 파이프, 관류 등

□ 적재화물이 없는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확대

○ 적재화물이 없는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 제출 생략은 '수리목적 또는 신조한 경우'로 제한 → 적재화물이 없는 모든 자력운송수단 수출 시 적재화물목록 제출 생략

※ 출항보고서 등으로 적재화물목록 제출 갈음

□ 수출신고 빈번오류 항목을 자율정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리 강화

○ 물품소재지와 소재지 기본주소 항목은 자율정정대상에서 제외 ([별표10])

※ 세관별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물품소재지 변경은 신고 취하 또는 각하 필요

□ 조문 순서에 따른 [별표] 및 [별지] 순서 정비

○ [별표] 및 [별지]의 번호를 조문 순서에 따라 변경

□ 기타 개정 사항

○ 분석결과에 따른 직권정정에 대한 근거 조문 수정 (제37조 제2호)

※ (기존) 제13조(계약상이수출신고서의 처리) → (개정) 제14조(분석의뢰)

○ 선상수출신고 전 수출물품 적재를 위해 제출하는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신청)서' 서식 문구를 명확하게 변경(별지 제10호 서식)

※ 서식명·본문 변경 :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 → 수출신고전 적재허가
기한 기재란 변경 : 유효기간 → 적재완료기한

○ 같은 조문 내 인용 조항을 나타내는 중복 문구 삭제 (제50조 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고려한 조문 정비

4. 규제대상여부 :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 담 당 자 : 이현성 사무관(042-481-7825, lhs1201@korea.kr)
남기오 주무관(042-481-7802, namgo8520@korea.kr)

○ 제출기한 : 2025. 5. 20.

○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2025년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① 논문 원고
② 논문투고 신청서
③ 연구 윤리 확인서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 의 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